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에너지 교육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590호 · 제221059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5. 23.

3. 회 부 일 : 2025. 5.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21059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제2210591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에너지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부족함.

이에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두 개의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에너지 교육사업을 포함시키고,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에너지 교육사업 실시 및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에너지 교육 사업

「에너지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1.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8조의2에 따른 에너지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①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에너지 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가치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국민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3. 에너지 관련 교육교재, 웹사이트,

	영상자료 등의 기획·제작 4. 에너지 분야 교육 강사의 양성·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교육 관련 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급격한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행동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에너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재정적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에너지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상으로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을 통해 각각 기후위기 대응 교육,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

1)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또는 특정 에너지원 중심의 교육에 한정되어 있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체계적 교육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에너지안보,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 경제적 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포괄하는 국민 대상 교육체계가 부재하여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교육을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한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한편, 「에너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의 에너지 교육 시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안 제18조의2의 교육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외에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위탁업무를 에너지 교육 실태조사, 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교육인력 양성 등으로 확장하여 에너지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문 의 처
02)6788-5468